

제418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제 9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0월 25일(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4년도 국정감사 국회모욕 증인 고발의 건
- 2024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및 동행명령 회피 증인 고발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 | | |
|------------------------------------------|---|
| 1. 2024년도 국정감사 국회모욕 증인 고발의 건 | 7 |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8 |
| 2. 2024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및 동행명령 회피 증인 고발의 건 | 8 |

(14시49분 개의)

○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처리코자 합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는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국회에서 거론돼야 될 문제인가라고 생각하면서도 행정안전위원장이기에 앞서 국민의 대표로서 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광동 위원장의 태도와 발언에 개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의 김광동 위원장은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학자가 아니라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인권 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을 조사해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광동 위원장이 보여 준 이러한 그릇되고 편향된 역사 인식과 발언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을 대하는 태도는 국회가 입법한 5·18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언행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국회모욕의 죄로 고발코자 합니다. 곧바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김광동 증인을 고발하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달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이달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 오전에 동료 위원이신 한명도 위원님 분노와 고뇌에 찬 발언 정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 사진 고르는데 정말 수준 낮춰서 고민했다, 고민했다 하는 것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직자 출신으로 우리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도 보면 5·18 민주화운동은 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우리도 이어간다고 정확하게 우리 당의 정강 정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기록을 찾아보니 위원장께서 어떤 부분에서는 또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인정 안 하듯이 오락가락해서 국회에 의원들은 여기 있지만 저 자리에 앉아서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럽기도 하겠다 해서 오후 첫 질의에 위원장님께 속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주고 당사자, 위원장으로서 충분하게 본인이 기관장으로서의 이 임무에 있어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기회를 주고 싶다 이렇게 요청했었는데 위원장님, 상임위의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으로서 이 상임위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관장하실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동료 위원으로서 제 의사진행발언이 위원장님으로부터 바로 묵살되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결정을 하신다니까, 저는 사실 오늘 두 가지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동료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왜 못 받아들이는지, 왜 아닌지도 말씀 안 하시고 묵살하신 것 그리고 앞으로 회의 진행이 있을 때 2시 30분에 하겠다고 하셨으면 못 하면 몇 시까지라도 연장 시간을 정확하게 적시해 주시는 의사진행,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앞의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모멸감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김광동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3조 국회모욕의 죄를 들어서 지금 표결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김광동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다시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국회모욕의 죄는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돼 있습니다.

2항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인데 증인이 기관증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지금 보면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증인에게 말씀하시면서 5·18에 미국이 북한보다 훨씬 책임이 있다, 한미연합사 작전부대가 개입했다 이런 유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혹시 외교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지, 저도 속기록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속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발언을 순화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다는 것은 김광동 위원장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북한

의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김광동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발언을 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계시는 광주시민회도 북한의 개입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정부에서 그동안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광동 위원장이 학자로서의 개인 입장과 정부 장관급 위원장으로서의 발언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관급 위원장으로서의 발언으로서 지금 다시 한번 물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물어 주시지 않고 이렇게 국회모욕죄로 전체회의에 회부해서 거수하는 것은 조금 다소 강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회를 안 주시면 본 위원의 발언 시간에도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래요.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저는 광주 서구을이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 보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위원입니다.

우리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의2(정의)에 보면 ‘이 법에서 5·18민주화 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 전후하여 발생한 현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제8조에 보면 이러한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혐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정의 규정에서 민주화운동을 이렇게 정의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전제입니다. 또한 북한군도 개입하지 않았다를 전제로 한 게 민주화운동의 정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김광동 위원장님께서는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언했던 것과는 많이 후퇴해서, 아주 마지못해서 북한군 개입은 없다라고 오전에 본인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개입 유무에 대해서는 북한은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위원장님께서 바로 표결을 하시든지 아니면 굳이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북한 개입 유무에 대해서 ‘예스, 노’로 간단히 질문하시고 의사진행을 하시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똑같은 의견이면 이 정도로 할까요?

○김종양 위원 저도 의견 한번 개진해야겠어요. 아까 사실 오전에……

○위원장 신정훈 김종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양 위원 오전 질의에서 사실 의사진행 하고 싶었었는데 여건상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광동 위원장 지난번 증언 내용을 보니까 사실 저도 그 당시에 정확하게 못 들어 가지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속기록 내용은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언급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속기록을 읽었었고요.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물론 진실·화해위원장께서 우리 위원들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증감법상 어떤 모욕죄로 우리가 고발한다는

그런 부분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증감법상 우리 모욕죄라는 건 의회 운영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고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건으로, 도덕적으로 비난을 하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여기서 증감법을 내세워 가지고 모욕죄로 고발을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오전에 우리가 회의를 마칠 때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잖아요. 속기록 내용을 당사자가 직접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발언한 부분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토록 하고 그다음에 또 의견을 물어볼 수는 있겠지요. 본인이 답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그걸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후의 어떤 조치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식사시간 중에 야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별씨 결론을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서 오전에 결의했던 그런 내용 진행도 없이 바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의사진행상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배준영 위원님 하시고, 이 정도로만 하시지요.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강기정 광주시장에 대해서 위증죄로 고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광주시의 전몰 미망인회 등 바깥에서 시위하던 분들을 집무실에서 만났냐는 질문을 제가 광주시 국감장에서 분명히 했는데 여러분들, 광주시 국감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속기록도 있습니다. 분명히 집무실에서 몇 번 만났다고 그랬는데 만난 적이 없다고 광주시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훈 공법단체의 시장 면담 관련 자료를 보면 3월 10일에는 공법 4·19 3단체, 3월 7일 광복회, 6월 18일 6·25 참전유공자 광역시지부, 6월 19일 광주·전남재향군인회, 7월 23일 공법 5·18 3단체, 8월 22일 공법 5·18 3단체 이렇게 만났고요.

그리고 바깥에서 시위하던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양 위원님이 플래카드의 밑에 써져 있는 전몰 미망인 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당시에 광주시장도 명백하게 봤을 텐데 집무실에서 만났냐는 제 질문에 분명히 만났다고 그랬는데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주시 국감을 마치고 나서 10월 24일에 이르러야 광주보훈회관에서 70명을 만났는데 그중에 상이군경회 등 관내 9개 보훈단체, 이때 만났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물어봤을 때는 명백하게 위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에 관련돼서 논의를 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위증죄로 강기정 광주시장을 고발조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제가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해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이해식 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제가 한병도 위원님 질문한 이후에 잠시 위원장님 방에서 전화통화를 한 이후에 위원님들 질의응답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김광동 위원장께 어떤 입장을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군이 개입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은 북한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가 돼서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개입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을 훼손하고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명예의 존엄을 정말 해치는 너무나도 심각한 발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 모두를 떠난 문제고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정신에 담아야 한다고 공약까지 했던 사항이고 그 공약을 이행하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김광동 위원장의 이런 주장은 국민의힘 세력 내에 이런 헌법정신으로 기록하기를, 수록하기를 반대하는 일부 극우적 시각을 대표하는 그런 입장의 어떤 표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광동 위원장을 국회모욕죄로 고발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정당한 문제 제기를 국민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달희 위원**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는 주셔야지요.

○**위원장 신정훈**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야당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로서 마냥 정치적 공방을 하고자 이 자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한히 기회를 드리고 또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말씀이고요. 또 저로서도 그 부분을 더 충실히 귀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고 여든 야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당이든 이 문제는 5·18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국가적으로 이미 확립된 규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어야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국회의 중연대에 나와 가지고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확인하고 확인을 더 했습니다. 첫째는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의 개입이 없었다고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다시 부연설명 했습니다, 본인이.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제가 지금 이건 약간의 의역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하여튼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부연설명을 해 가면서까지 광주 민주화운동에 어떤 영향도 없었을 북한의 개입과 영향에 대해서 유형, 무형의 어떤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나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자로서 또 공직에서 벗어나서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명쾌하게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을뿐더러 북한의 영향도 없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식적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적으로 혼돈시키고 있고 부정하고 있고 광주 시민들의 이 희생을 계속 폄하하고 있는 일부 극우세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미국 이야기를 할 때 그것도 다시 속기록을 한번 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여러분들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개입할 수 있다고 한 이야기를 제가 빗대어서 그러면 주한미군 사령부,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권에 있었던 군대가 광주에 투입됐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한번 물었던 겁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제 개인의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개입이 있었다, 없었다를 이 자리에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런 미국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제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역사 인식은 별도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광동 위원장의 이 역사 인식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확인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어떤 경우도 최후에 할 말은 하게 해 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광희 위원** 그만 좀 하세요.

○**채현일 위원** 지금까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달희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시켜 봅시다.

○**채현일 위원** 지금까지 여러 번 했는데 그렇게 하는데 또 기회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위원장 신정훈**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광희 위원** 밀어붙인다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발언 다 하셔 놓고.

○**조은희 위원**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오전에.

○**이광희 위원** 지금 뭐가 밀어붙이는 겁니까? 표결하자는 거지.

○**위원장 신정훈** 이 정도의……

○**윤건영 위원** 행안위가 국어시간 아니잖아요. 한국말도 이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김종양 위원** 한국말도 못한다, 그런 식으로 또 이상하게 비약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이광희 위원** 아니, 5·18 가지고 쉴드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달희 위원** 쉴드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회의 진행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위원장 신정훈** 이 문제는 제가 오전에도 문법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고요. 상식적인 판단을 이야기한 것이라고요. 실수했을 수 있으니까 다시 물었고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이광희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저는 쪽팔립니다, 정말. 창피해! 어떻게 5·18에 대해서 이 따위 소리를 국회에서 듣습니까?

○**이달희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시켜 보자는 거지요.

○**이광희 위원** 뭘 한 번 더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안 했는데?

○**윤건영 위원** 진행하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달희 위원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광희 위원 지금 말장난으로 5·18의 정신을 훼손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용납합니까?

○김종양 위원 위원장님, 경고 좀 하세요.

○위원장 신정훈 이광희 위원님,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위증죄도 심의하실 거지요?

○위원장 신정훈 위증죄는 우선……

○이광희 위원 그런 식으로 물타기하지 마세요. 일단 이것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위증죄는 간사 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를 모아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오전에. 그런데……

○배준영 위원 이것은 속전속결로 하시면서 왜 이것은 못 하십니까?

○위원장 신정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위원님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다시 확인하고 항의했던 문제고요.

○배준영 위원 아니,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위원장 신정훈 아니요, 아니요.

○배준영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도 됩니까?

○위원장 신정훈 아니요, 이 진행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배 위원님 그러지 마세요. 이것 일단 처리하고 합시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은 여야 간에 이미 국민들……

○배준영 위원 그것은 좋은데……

○위원장 신정훈 전체 국민들이 이미 확립된 규범이라고요.

○배준영 위원 아니, 그것은 진행하는 게 맞는데……

○위원장 신정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 신정훈 예.

○배준영 위원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곧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국회모욕 증인 고발의 건

(15시12분)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국회모욕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오늘 국정감사 출석 증인 중 국회모욕의 죄를 범했다고 인정되는 김광동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모욕의 죄로 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발장의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광동

증인을 국회모욕죄로 고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71조와 제112조에 따라……

○**배준영 위원** 간사님, 우리 있을 필요가……

○**조은희 위원** 예, 저희들은 이석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5·18 문제 가지고 이러시면 안 되지요.

○**조승환 위원** 5·18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회모욕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의사진행의 문제고……

○**이광희 위원** 위원님, 여기 앉아 보세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쉴드 칠 걸 쳐야지. 조승환 위원님!

○**조승환 위원** 이것은 쉴드가 아니고 5·18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신정훈**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나뉘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71조와 제112조에 따라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증인 고발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22인 중 출석 14인, 찬성 1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국회모욕 증인 고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체회의는 정회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22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훈**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곧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4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및 동행명령 회피 증인 고발의 건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및 동행명령 회피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오늘 국정감사 출석 대상 증인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였거나 동행명령에 따르지 않은 4명의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13조·15조의 규정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 및 국회모욕죄로 각각 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발장의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명의 증인들은 불출석 및 국회모욕의 죄로 고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체회의는 정회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5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22인)

김상욱 김성희 김종양 모경종 박정현 배준영 신정훈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달희 이상식 이성권 이해식 정동만 정춘생 조승환 조은희
채현일 한병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서기영